

특수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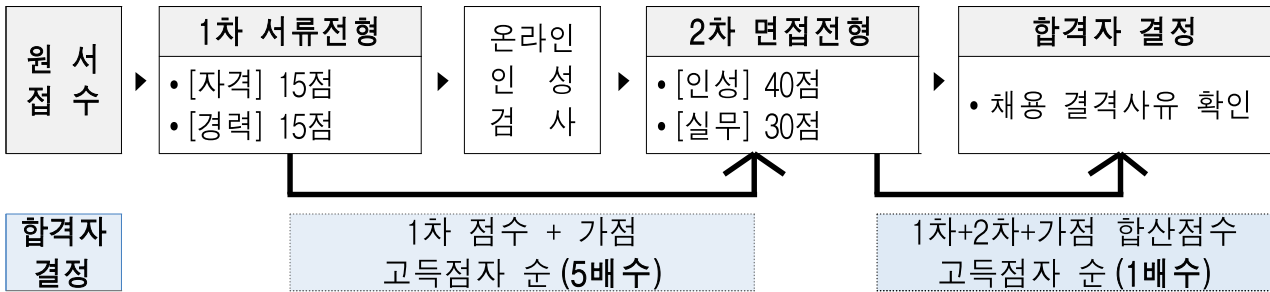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특수직(기간제근로자) 1명
- 근무기간 : '26. 8월 ~ '27. 8월 (1년간)
 -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등급이 '우' 이상인 경우, 1년 또는 프로젝트 사업 기간 내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 예산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5. 10. 24. ~ '31. 10. 23.(예정))
- 근무장소 : K-water 금강유역협력단 예산현대화사업팀
 -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월산로 50번길 3, 3층
- 채용직무 : 기술관리(건설사업)
 - ※ 직무 세부내용은 첨부 1. 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형태 : 주 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로)
- 보수수준 : 기본연봉 27,588천원(성과급, 부가급여 등 별도)
 - ※ 기본연봉 중 직무급은 향후 직무환경등급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급여 사항은 특수직 관련 공사 연봉기준 등에 따름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합숙소 지원 등
 - ※ 공사 복지후생 관련규정에 따름

지원 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2 참조)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전형 절차



전형 방법

1.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7. 6.(월) ~ '26. 7. 20.(월) 18:00까지

- ※ 입사지원시스템은 '26. 7. 6.(월)부터 입력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에 자동 종료됩니다. 입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가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지원서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제출한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생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접수 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 입사지원시스템 주소(URL) : <https://k-water.recruiter.co.kr>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가점 등 합격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서류 사본을 입사지원시스템에 첨부·제출(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제출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암호화 파일 등의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허위 작성, 증빙서류의 위·변조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합격 취소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중 진위확인을 위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서류전형 발표 예정일 '26. 7. 28.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서류만 진위를 확인하여 인정(단, 유효기간 이후에도 '큐넷(www.q-net.or.kr) 단체진위확인', 'KCA 국가기술자격검정(cq.or.kr) 자격증 진위확인', 또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license.kacta.or.kr) 자격증 진위확인'을 통하여 자격 보유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류 외 증빙서류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26. 4. 30. (서류전형 발표예정일 포함 90일 전) 이후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만 진위를 확인하여 인정
- 입사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최종 합격시 원본 별도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미인정

- ① [필 수] 자기소개서(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작성)
- ②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또는 (최종)합격확인서
 - 단, (최종)합격확인서의 경우 최종 합격시 합격확인서 외 자격 증명서류 추가 제출 필요
- ③ [해당자]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만 인정
 - 기관장(협회) 직인이 반드시 날인된 서류에 한함
 - 세부 수행직무 및 참여(인정)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함
- ④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⑤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 ⑥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 ⑦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⑧ [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 ⑨ [해당자]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 가) 귀화허가를 받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상세, 前 국적 표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 나) 결혼이민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국적 취득 당시의 국적법에 의해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 제출

⑩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류: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⑪ [해당자] 관련 학교(학과 명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 첨부 5에 명시된 관련학과만 인정(고등학교 이상)

2. 1차전형 : 서류심사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평가항목 : 자격, 경력 및 우대사항

평가방법(배점)

○ 【자격】 15점

- 기술 직종 ‘공통’,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 ※ 첨부 3. 자격증 분류표에 열거된 자격에 한하여 인정
- ※ 제출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

자 격 증	점 수
기사급 자격증 이상	15점
산업기사급 자격증	10점
기능사급 자격증	5점
자격증 미소지자	0점

○ 【경력】 15점

-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관련 분야별 참여(인정)일수로 확인

2년(730일) 미만	2년(730일) 이상	3년(1,095일) 이상	4년(1,460일) 이상
0점	5점	10점	15점

발급기관	관련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시공), 기계(건설기계), 기계(용접), 기계(일반기계), 전기·전자(건축전기설비), 전기·전자(산업계측제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부문(상하수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기계부문(용접),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사항 내 일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

* [첨부 4] 건설기술관련 인정 경력 및 심사기준 참고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협회)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세부 수행직무 및 참여(인정)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함
 - 학력은 경력으로 인정 불가
 - ※ 해당 수행직무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 법률상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 10%)
 - 특별가점(다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 ① 장애인(10%)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10%)
 - ③ 한부모가족(10%)
 - ④ 북한이탈주민(10%)
 - ⑤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10%)
 - ⑥ 자립준비청년(10%)
 - ⑦ 건설기술관련 학과 졸업생(5%)
- * [첨부 5]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학과 범위 참고
-

3. 온라인 인성검사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 인성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검사내용 : 성실성, 대인 관계성 등 인성 검사

※ 결과는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해당 인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대상에서 제외

4. 2차전형 : 면접전형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면접방법

-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접 soal 과정 블라인드 면접 진행
-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성면접 실시
- 직무적합성 판단을 위해 구조화된 면접지로 실무면접 실시
- 무작위 면접번호 부여(개인신상 비공개), 면접 시 성명 등 개인 신상 표출 금지

□ 면접형태 : 일대다 형식 (지원자 1명 : 면접위원 다수)

※ 지원자 수 등의 사유에 의해 다대다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부서가 현장 사정을 감안하여 면접형태 결정

□ 평가항목 : 인성·실무 면접 및 우대사항

평가방법(배점)

- 【인성면접】 40점
- 【실무면접】 30점
-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 법률상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 10%)
 - 특별 가점(장애인) : 10%

※ 세부 전형별 면접위원 평균점수가 40% 이하인 경우 결격 처리

5.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전형) 및 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 합격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등 결원인력 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 선발 가능.

(차순위자 선발은 최초 면접전형 결과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점자 처리 : 아래 순위별 고득점자

- ① 취업지원대상자(10%가점 > 5%가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 ④ 서류심사 ⑤ 면접전형(인성) ⑥ 면접전형(실무) ⑦ 서류심사 (경력)
- ⑧ 서류심사(자격)

※ 위의 방법으로 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전형 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26. 7. 6. ~ '26. 7. 20.	○ 인터넷 접수	
서류심사	'26. 7. 23.	○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증빙서류(사본) 확인	서류결과 개별통보(7.28)
온라인 인성검사	'26. 7. 29. ~ '26. 7. 30.	○ 미응시자는 면접포기 간주	
면 접	'26. 8. 4.	○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최종합격자 개별통보(8.7)
입 사	'26. 8월 中	○ 채용결격사유 확인 후 계약체결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우대요건

구 분	가 점	제출서류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p>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가산(만점 초과 부여 가능)</p> <p>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p>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첨부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p> <p>※ 장애 정도 무관</p>	<p>각 전형 단계(서류, 면접)별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p>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사본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본 첨부(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첨부(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사본 첨부(본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공통)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귀화자)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첨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만 34세 이하(공고 마감일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첨부필요)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퇴소확인서 사본 첨부
건설기술관련 학과 졸업생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5% 가산	관련학교(학과명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사본 첨부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시, 가점 합격자를 30%내에서 결정하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미침

- 다만,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관련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원조사 부적격, 기타 채용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지원서 최종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암호화 파일 등의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첨부 서류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오타, 착오 등으로 지원서에 입력을 잘못된 경우
 - * 예시 : 자격사항 입력 시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번호, 취득일자 오기재, 영어 대/소문자간 혼동입력 등
 - 지원서 접수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첨부 6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기관으로 반환 요청 시 원본 서류는 우편을 통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관련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장애인증명서 등)는 우대사항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진위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면접 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생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의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전형단계 피해자는 최종 합격 절차를 통해 구제합니다. 다만, 채용 종료 후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차기 동일 모집단위 채용시험에서 피해 발생단계의 다음 전형단계부터 채용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비위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합니다.

□ 입사 관련 유의사항

- 면접전형 응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통신사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직권면직, K-water(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 지원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포함)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 기타사항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 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우 및 근무조건은 입사일 현재 K-water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 K-water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K-water 금강유역협력단 (☎043-230-4233)
 - ※ 답변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 청탁 금지 안내 >

- ◆ K-water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K-water 금강유역협력단장

- 첨 부
1. 직무기술서 1부.
 2. 채용 결격사유 1부.
 3. 자격증 분류표 1부.
 4. 건설기술관련 인정 경력 및 심사기준 1부.
 5.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학과 범위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첨부 1]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기술관리_건설사업		
직무환경	근무예정부서	모집인원	근무지역
	금강유역협력단 예산현대화사업팀	1명	충청남도 홍성군
직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술관리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공사감독,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 등 관련업무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 누수탐사·복구 및 민원처리 업무 등 		
필요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지식 건설기술(공통,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분야의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사업관리 분야의 관련 법령,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지식 - 필요기술 건설기술(공통,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분야의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도면, 시방, 내역 등의 분석기술, 현장여건 변화를 고려한 관련 설계서의 변경사항 도출 및 검토 기술 - 직무수행태도 전략적 사고, 분석적 태도, 조정능력, 공정성, 설득력, 협업적 태도, 창의적 사고, 합리적 사고, 정확성, 윤리의식 등 -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필요(권장) 자격	- 별도 요구 자격사항 없음		

[첨부 2]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16.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첨부 3] 자격증 분류표 (기술관리(건설사업))

구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공통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1급
토목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급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1급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기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배관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기계설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가스기사 용접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건축설비기사 설비보전기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전자통신	무선설비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자격증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 및 변경된 자격증을 모두 인정

[첨부 4] 건설기술관련 인정 경력 및 심사기준

인정 경력증명서	인정 경력 심사 기준
<p>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직무분야(전문분야)]</p>	<p>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시공) 기계(건설기계) 기계(용접) 기계(일반기계) 전기·전자(건축전기설비) 전기·전자(산업계측제어)</p>
<p>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기술부문(전문분야)]</p>	<p>건설부문(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기계부문(용접)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p>
<p>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사항]</p>	<p>경력사항</p>
<p>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직무분야]</p>	<p>전기</p>

* 심사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대해서만 건설기술 경력으로 인정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시행]
문서확인번호 : 5167-7653-7620-670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① Page : 1 /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19년 07월 04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쪽 중 제1쪽)

Page : 2 / 8
(3쪽 중 제2쪽)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발주자 공사(용역)개요	공사종류 공법	직무분야		비고
			전문분야 직위 확인정도	담당업무 직위 공사(용역)금액(백만원)	
2006.06.01	북영동합동공하수관거경비사업실시계획용역	하수도	토목	설계	
2006.09.29 (14일)	의정부시		상하수도	사면	
2006.06.01	백안-평광간도로건설기법및실시계획용역	도로	토목	설계	
2007.02.14 (107일)	대구광역시릉구정		상하수도	사면	

③ Page : 8 / 8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1.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국도	48 일
단지	317 일
도로	107 일
상수도	505 일
상수도(정수장,상수관로)	906 일
저수지	22 일
증수장	20 일
하수도	1,700 일
하천	22 일
하천[하천정비(지방)]	30 일
기타(미거재)	277 일
인정일수 합계	3,954 일

②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토목/수자원개발	58 일
토목/상하수도	3,901 일
인정일수 합계	3,959 일

* 기술경력에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인정일수 산정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합계와 직무/전문 분야별 인정일수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중 공사종류를 2종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 후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참여분야·인정일수 확인	전문분야별 참여기간(인정일), 인정일수 확인
③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Page : 1/5

① 이 증명서는 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③ 4/5 Pages

주요 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기술부문	직위	비고
		발주자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2003.07.03 ~ [근무중] (5,453일)	원자력발전소계측기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		전기	대리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지관리	전기전자응용		

5/5 Pages

참여일수

기술부문 참여일수 현황		② 전문분야 참여일수 현황	
기계	0 일	산업안전	0 일
산업	0 일	일반산업기계	0 일
전기	5,453 일	전기설비	0 일
정보통신	0 일	전기전자응용	5,453 일
참여일수 합계	5,453 일	정보관리	0 일
		정보통신	0 일
		철도신호	0 일
		체계공학	0 일
		프로젝트매니지먼트	0 일
		참여일수 합계	5,453 일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참여분야·인정일수 확인	전문분야별 참여기간(참여일), 참여일수 확인
③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제1번)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확인서 일련번호 : 02-202304420D

등급	초급	수첨발급번호	41120220114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신고한 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별지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① 2023년 03월 1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210mm×297mm [백상지(80g/㎡)]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원본(조각)번호 : ZXY9E58-Z23ZCX-TC0DOMM
 내용문의: 협회 중앙회 경력관리담당 (02-3488-6183~7)

1 / 3

경 력 사 항

성 명 : 이재연

등 급 : 초급

수첨발급번호 : 411202201141

② 기 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 여 사 업 명	발주자
2022.01.20 ~ 2022.06.09	(주)주인정보시스템	과장	시공관리	2022년 국가및 유역수도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영성)	한국수자원공사
2022.04.15 ~ 2022.06.09	(주)주인정보시스템	과장	유지관리	2022년 진도군 지방상수도 ICT설비 점검정비 용역	한국수자원공사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내용문의 : 우리협회 중앙회 경력관리담당 (02-3488-6183~7)

③ 3 / 3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일수 확인	근무경력기간 확인
③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감리원 경력확인서

회원번호 0040859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1 / 4 Page

(뒤쪽)

성명		전력기술근무경력 [총괄]				
근무처명	참여기간 (참여일수)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직위	비고
(주)자람엔수 엔지니어링	2023.03.13 2023.07.17 (127일/127일)	한강하류권4차급수체계조정사업전기시설공사통합감리1용역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수도사업단	전기 상.하수도, 정수시설	공사감리 상주감리	원장 상무	
(주)자람엔수 엔지니어링	2023.07.20 2024.06.25 (342일/342일)	본사	전기 기타	공사감리 공사감리	본사 상무	현재
(주)자람엔수 엔지니어링	2023.10.25 2024.06.16 (55일/236일)	SK하이닉스 위수탁사업전기시설공사전기감리용역 한국수자원공사	전기 상.하수도, 정수시설	공사감리 부분상주감리	현장 상무	
②	(실근무기간) (12,683일)	(위의 내용은 신고일 2024년06월25일까지 확인된 경력사항입니다.) - 이 하 여 백 -				

③ 4 / 4 Page

구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직무분야·인정일수 확인	근무경력일수(실근무기간) 확인
③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5]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학과 범위

분야	관련 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건축)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지원	정보처리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에 위에 명시된 단어들이 명시된 학과만 관련 학과로 인정(고등학교 이상, 재학중인 경우 인정 불가)

[첨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 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